

보 도 해 명 자 료 (14. 4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·호주 FTA 중소기업·상인 보호 ‘나몰라라’”
(14.4.10, 연합뉴스) 및 “한·호주 FTA, 중소기업 보호
장치 호주가 더 확보”(14.4.10, 경향)

1. 기사내용

- ☐ 한·호주 FTA에 대형마트·기업형 슈퍼마켓(SSM) 영업시간 제한,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 및 상인을 보호할 제도를 FTA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
 -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분쟁 대상이 될 여지를 남김
- ☐ 한·호주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불균형적
 - 한국의 경우 국가 계약법상 중소기업 할당 제도를 제외한 반면, 호주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특혜를 포괄적으로 배제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◇ 한호주 FTA에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☐ 대형마트·SSM 영업시간 제한,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모두 FTA 의무 위반 소지가 없으므로 협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

- 대형마트·SSM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협정상 허용되는 정당한 국내규제(domestic regulation)인 바, 유보의 대상이 되는 협정상 의무(시장접근)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.
-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는 대·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협정에 규정 불필요
- ☐ 우리나라는 '95년 WTO 서비스무역협정(GATS)에서 유통서비스를 개방하였으며, 한·호 FTA를 비롯한 우리의 기체결 FTA도 이에 기초하여 시장개방을 하였음

◇ 한호주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불균형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☐ 양국 모두 중소기업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, 다만 기술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임
 - 호주의 경우, 일반 주해에 중소기업 특혜에 대한 예외를 규정 하였으며,
 - 우리의 경우, 조달시장을 개방한 모든 주체 및 분야(중앙정부기관, 지방정부기관, 공기업의 상품, 서비스, 건설 서비스, 민간투자)에 개별 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예외를 규정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(044-203-5751)